

#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도로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무단점용 정의규정 수정
- 조례안 제3조
  -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도로법 제40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를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  
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  
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조례는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 ----- -----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 -----.</p> <p>② ----- -법 제61조제1항 ----- -----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p> <p>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p> <p>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p>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 성 자	안전건설과 장 근 용
연 락 처	(033)330-2406

# 관계 법령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 ⑥ 생략